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084 |
|----------|------|

제안연월일 : 2017. 9. 1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7년 6월 9일 전철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903번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같은 해 8월 14일 문영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043번 같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,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서울시 도시 공간계획의 연계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항공법의 제명 변경 반영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도시재생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추가함(안 제64조제2항제3호).
- 나. 항공법의 제명 변경 반영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(안 제44조제3항제1호 등).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주재하는”을 각각 “주관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안하고자 하는”을 “제안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청취하고자 하는”을 “청취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반영하고자 하는”을 “반영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7호 중 “개발하고자 하는”을 “개발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건축하고자 하는”을 “건축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지정하고자 하는”을 “지정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“자문하고자 하는”을 “자문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49조제1호 중 “「항공법」”을 “「공항시설법」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3항제3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“건축하고자 하는”을 “건축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58조의3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해촉을”을 “위촉 해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촉된”을 “위촉 해제된”으로 한다.

제6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

나.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

다.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

라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(대안)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3조 (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)</p> <p>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<u>주재하는</u>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공청회를 <u>주재하는</u>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제3조 (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관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주관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조 (도시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<u>구청장에게</u>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| <p>제4조 (도시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 <u>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한 계획 입안시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(세입자 포함)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.</p> | 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② ~ ④ (생략)</p> |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| <p>⑤ ----- 반영하려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⑥ (생략)</p> |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6조 (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)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| <p>제16조 (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1. ~ 6. (생략)</p> |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7. 민자역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</p> | <p>7. ----- 개발하려는 -----</p> |
| <p>8. (생략)</p> |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(아파트에 한한다)을 <u>건축하고자 하는 경우</u>,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축하려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| <p>③ (생 략)</p> |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7조 (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)</p> | <p>제17조 (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)</p> |
| <p>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<u>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</u>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(이하 "시도시계획위원회"라 한다)에 자문을 할 수 있다.</p> | <p>① ----- <u>지정하려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| <p>② 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</p> | <p>② -----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회에 <u>자문하고자 하는</u>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| <p>----- <u>자문하려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49조(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)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| <p>제49조(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1. 「<u>항공법</u>」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</p> <p>2.·3. (생 략)</p> | <p>1. 「<u>공항시설법</u>」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5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</p> <p>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「<u>도시재정비 촉진</u>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“<u>재정비촉진지구</u>“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④ ~ ⑨ (생 략)</p> <p>⑩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·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<u>건축하고자 하는</u>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</p> | <p>제55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다른</u>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⑩ ----- ----- <u>건축하려는</u> ----- -----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경우 재위축할 수 없다. | 해제된 -----. |
| <p>제64조(설치 및 기능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<u>시도시계획위원회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21조제1항의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</u></p> <p>4. (생 략)</p> | <p>제64조(설치 및 기능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</u> <u>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</u> <u>나.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21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</u> <u>다.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</u> <u>라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|